

한국사학진흥재단 행복기숙사 유한회사 [홍제행복기숙사] 육아휴직 대체 인력 채용 공고

행복기숙사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경영관리, 회계·세무 등의 종합적인 행정업무와 입사생 관리업무를 수행할 유능한 인재를 모집합니다.

※ SPC(Special Purpose Company, 특수목적법인) : 한국사학진흥재단이 출자하여 설립된 행복기숙사의 운영관리 주체임

2026. 6. 5.

한국사학진흥재단 행복기숙사 유한회사 대표이사

1 채용 개요

1. 채용분야 및 인원

○ 기간 계약직 1명

기숙사명	고용형태	분야		직급	채용인원	담당 예정 직무
한국사학진흥재단 행복기숙사 유한회사 (홍제행복기숙사 지점)	기간 계약직*	행정 (전일 근무)	신입	5급	1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관장 보좌 • 행복기숙사 운영, 원리금 상환 등 SPC 운영 전반 업무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사원총회 등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- 외부 감사 및 요구자료 대응 - 기숙사 운영계획 수립 - 기숙사 시설관리에 관한 업무 - 예산 및 회계 결산(기숙사비 책정 및 수납 포함) - 입사생 관리 업무 - 기타 SPC 행정에 관한 업무 등

* 육아휴직 대체 인력 채용 건으로, 육아휴직자의 복직 시까지로 한정

2. 지원 자격

○ 공통 자격

구분	세부 응시 자격
5급	- 연령·학력·전공 등 제한 없음 ※ SPC 표준 운영규정(인사규정)에 따라 정년 만 60세임 - SPC 표준 운영규정(인사규정) 제15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

○ 경력 산정기준 등 기타사항

- 경력 1년은 365일로 산정하고, 자격 보유 및 경력 산정, 우대사항 적용 여부의 인정 기준일은 접수 마감일('26. 6. 11.)로 함

3. 근무 조건

○ 근무 장소

기숙사명	근무장소
한국사학진흥재단 행복기숙사 유한회사 (홍제행복기숙사 지점)	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제동 337-1, 홍제행복기숙사

○ 근무 기간 : 2026.06.22. ~ 2027.09.03.(약14개월)

○ 근무 시간 : 주 40시간, 1일 8시간(09:00~18:00)

○ 보수(연봉) : 금 2,900만원 이상 (수당, 복리후생, 퇴직금 별도)

※ 입사지원서에 기재하고 증빙이 확인된 경력사항에 한해 내규에 따라 초임연봉 가산(1년당 50만원, 최대 3년 인정)

2 전형 절차

1. 전형별 세부 일정

전형 단계		일 정	비 고
1단계	지원서 접수	'26. 6. 11.(목), 14:00까지	지정된 양식 및 제출기한 미준수 시 서류접수 "결격" 처리
2단계	서류 심사	~'26. 6. 15.(월)	지원자가 채용 예정 인원의 5배수 미만 시 생략 가능
3단계	인사위원회 면접 심사	'26. 6월 중 예정	온라인 면접 합격자 개별 안내
4단계	대표이사 면접 심사	'26. 6월 중 예정	온라인 면접 합격자 개별 안내
5단계	최종 합격자 발표	'26. 6월 중 예정	합격자 및 예비합격자 개별 안내
6단계	임용	'26. 7. 1.(수)	-

※ 전형단계별 진행상황에 따라 일정 변동 가능

2. 전형별 주요 내용

단계	평가 항목	합격 기준	합격자수	동점자 처리
서류 심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심사위원 2명 평가방법 : 서면심사 평가항목 : 자기소개서(60), 직무수행계획서(40) 	평가점수+가점 합산 평균 고득점순 ※ 80점 미만 탈락	채용인원의 5배수	전원 합격
↓				
인사위원회 면접 심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심사위원 6명 이내 평가방법 : 개별면접 평가항목 : 고객만족역량(30), 조직역량(30), 개인역량(40) 	평가점수 평균 고득점순 ※ 80점 미만 탈락	채용인원의 3배수	전원 합격
↓				
대표이사 면접 심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심사위원 1명 평가방법 : 개별면접 평가항목 : 직무수행계획(40), 역량(30), 태도(30) 	평가점수 고득점순 ※ 80점 미만 탈락	채용인원의 1배수	-
↓				
임용 대상자 확정 및 임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결격사유 및 제출서류 확인 등 	신체검사(적부) 결격사유(적부) 제출서류(진위여부)	결격사유 없는 자	-

※ 예비 합격자 선정 가능(임용 포기 또는 채용 비위 발생 시 대비, 지정일 기준 6개월 유효)

3. 전형별 주요 내용

○ 가점 세부내용

가점항목	세부 가점 대상	가점	적용 전형
취업지원대상자	국가유공자 등 법령 상 취업지원대상자에 전형별 만점의 5% 또는 10% 부여(증명서의 가점비율 적용) 필수제출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	5점 또는 10점	서류심사

3 원서 접수 및 제출 서류

1. 원서 접수 방법

- 접수 방식 : e-mail을 통한 온라인 접수
- e-mail 주소 : kasfohappy@gmail.com

○ 접수 기한 : ‘26. 6. 11.(목), 14:00까지

○ 접수 기준

- e-mail 접수 외 방문 또는 우편 접수 불가
- 접수 마감 시간 후 접수 및 수정 불가
- 본인 서명 누락 또는 지정된 양식 미준수 시 접수 불가
- e-mail 제출 시, 「행복기숙사 지원_○○○」 제목으로 모든 제출 서류를 하나의 PDF파일로 병합하여 제출
-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학력, 경력, 자격 관련 사항은 접수 마감일(‘26. 6. 11.) 기준으로 서면 증빙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기재 착오, 누락 등에 따른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음

○ 문 의 처

- 한국사학진흥재단 행복기숙사(유) 채용담당자 ☎ 053-250-3881

2. 제출 서류

구 분		제출 서류	비고
입사지원 시 (필수제출)	공통	1. 입사지원서, 자기소개서, 직무수행계획서 (지정양식) 2.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공 동의서 (지정양식) 3. 최종 학력의 졸업 및 성적증명서	지정양식 이용 본인 서명 필수 (스캔파일제출)
	해당자	1. 취업지원대상증명서 (제출기관 명시) 2.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자격, 수상 내역 증빙 ※ 어학증명서의 경우 채용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3. 경력사항 증빙 : 경력(재직)증명서,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, 고용보험가입이력서 등 경력 증빙 자료 4. 자격 증빙 자료	미제출 시 미인정 (스캔파일제출)
최종 합격자		1.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(병역사항 포함) 2.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 3. 채용신체검사서 ('채용건강검진대체통보서'로 대체가능) 4. 결격사유 부존재 약약서 (합격 시 별도 안내)	원본 제출

※ 입사지원서, 자기소개서, 직무수행계획서 상에 기술된 사항에 대한 사실관계 불일치 및 증빙 불가 시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

3. 유의 및 참조 사항

○ 전형 일반

- 입사지원 접수 결과 서류심사 합격자 배수(채용예정인원의 5배수) 미만으로 응시한 경우, 서류심사를 제외하고 인사위원회 면접 심사부터 시행할 수 있습니다.
- 공고문에서 제공한 지정 양식 미사용, 서명 누락, 허위기재, 기재착오, 구비 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.
-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고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.
- 작성내용 또는 제출서류가 허위·위조임이 판명되거나 고의로 누락·추가한 사항이 확인될 경우 합격 취소(임용 이후 면직 처리)할 수 있습니다.
- 지원서 접수 결과 지원자가 채용 예정인원 수와 동일하거나,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-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된 사항은 재공지할 예정이며 SPC는 직종이나 성별에 의해 인사·급여·복지 등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.

○ 채용비위 관련

- 채용관련 청탁자, 부정합격자, 비위연루자는 SPC 인사규정에 따라 합격이 취소(임용 후 직권면직)되며, 향후 5년 동안 다른 행복기숙사 SPC 채용 시험에 응시자격이 제한됩니다.

붙임. 입사지원서·자기소개서·직무수행계획서·개인정보 동의서 각 1부. 끝.

제15조(결격사유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.

1. 피성년후견인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3.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
 - 6의2.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 - 6의3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- 6의4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 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- 나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
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8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9. 신체검사결과 채용실격으로 판정된 자
10. 다른 특수목적법인 채용 시 부정합격하여 채용이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